

##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179호(2023.9.26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  
보건복지부장관

###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.

별표1의 일부를 별지2~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.

별표1의 약제 중 별지5~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: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
2.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4년 10월 1일
3.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4년 10월 14일

**제2조(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**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별지5’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4월 30일 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.